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5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 박성훈·박충권·고동진

김성원 • 이상휘 • 정연욱

조배숙・한지아・안상훈

이헌승 · 이양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생명·재산 등에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나.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경우, 인증 기관은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다.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의 경우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 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부를 확인하는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제품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수거를 명할 경우 그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인증받은자가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의 명령,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제4항에 따른 보고,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과 보완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현장조사"를 "시판품조사·현장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

제25조 중 "제품으로서"를 "제품·서비스로서"로, "단체표준제품을"을 "단체표준제품·서비스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
- ②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 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 -----하며, 적부를 확인하 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다만, 제5조제1항 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 하고 검토 중인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⑤ (생 략) (혂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 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 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 의 제거 · 정지 또는 판매의 정 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 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 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

(현행과 같음) <삭 제>

<u>(2)</u>			 	 	
	- <u>7]</u>	<u>ス</u>	 	 	

제21조의2(제품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 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 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품 수거를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 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 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u>④</u> 제1항에 따라 제품수거 명 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인증받은자가 제품수거 명 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 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할 수 있다. 이 때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인증심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 과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 른 제품수거 명령의 일부 또는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 제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아니한 때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u>수 있다.</u>
⑧ 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의
명령,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
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제
<u>4항에 따른 보고, 제6항과 제7</u>
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과 보
완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조(인증의 취소) ①
,
1.•2. (현행과 같음)
3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
<u>사기준</u>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
 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 항에 따른 명령 또는 <u>제21조</u> <u>제2항</u>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때
- 6.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 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 표준인증을 받은 <u>제품으로서</u>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u>단체</u> 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 여야 한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기

4시판품
<u>조사 • 현장조사</u>
5
제21조
의2제1항
6. (현행과 같음)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
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u>제품·서비스로서</u> -
<u>단체</u>
표준제품·서비스를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u>의무안전인증</u> 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u>자율</u> 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4. ~ 18. (생 략) <u><신 설></u>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면제)
1. • 2. (현행과 같음)
3
<u>안전인증대상</u>
<u>기계등</u>
<u>자율안전확인</u>
<u>대상기계등</u>
4. ~ 18. (현행과 같음)
\ _ \ \ \ \ \ \ \ \ \ \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
세42조(벌칙) ①
1 • 9 (혀해고 간으)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 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u>제21조제2항</u>에 따 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신 설>

<u>4. · 5.</u> (생 략)

<신 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3.		
	제21조	의2제1항

- 4.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자
-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②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 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